November 27, 2026

법무부「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」발표

- 주요 내용 및 상장회사협의회 운영실무 매뉴얼과의 차이점

I.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발표 배경 및 성격

법무부는 2026. 11. 25.「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」(이하 "가이드라인")을 발표하였습니다. 2025. 7. 22. 개정 상법에 따라 2027. 1. 1.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별도(개별)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해야 합니다(상법 제542조의14·제542조의15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이하). 그 밖의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. 가이드라인은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회사와 이사회 결의를 통한 개최 회사 모두에 적용됩니다.

가이드라인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, 고시 제정 이전에 전자주주총회의 사전 준비, 소집, 진행 및 종료 단계에서 유의할 사항을 제시한 참고 기준입니다.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으며, 미준수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. 또한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, 반대로 가이드라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다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추후 결의취소 소송의 재량기각 판단이나 이사의 주의의무 이행 판단에서 주요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

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개관하고,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「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」(2026. 9., 이하 "매뉴얼")과의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령상 구조 및 주요 쟁점은 「2027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따른 실무 쟁점과 대응」(2026. 9. 14.) 뉴스레터를 참고 바랍니다.

II.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

가이드라인은 사전 준비 단계, 소집 단계, 총회 진행 단계, 종료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법적, 실무적 조치를 설명하고 있으며,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구분	세부 항목	주요 내용
원활한 운영 보장	통합 운영규정	- 현장과 전자주주총회에 통일 적용되는 운영 규정 마련
	인력·설비	- 관리기관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리조직과 총괄 책임자 지정 - 주주의 실시간 참가(영상, 음성, 자료화면 동시 송출)가 가능한 물적 설비 구축
	통신장애 방지	- 통신장애 대응 시스템 및 백업, 장애 매뉴얼 및 교육, 사전 고지 등 통신장애 대응 조치 마련
	통신장애 시 연기·속행	- 주주총회 개회 직후 결의로 의장에게 연기·속행권을 위임하는 사전 결의를 하거나, 정관·주주총회 운영규정에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한 조항 마련
전자주주 총회 남용 방지	사전신청제 기준	- 사전신청제를 주주의 출석제한 수단, 주주 선별 수단으로 사용 불가
	소집통지 기재 사항	- 사전신청 기간(마감시한), 접속·인증방식, 질의·발언 제한 등 주주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은 링크, QR 코드가 아닌 소집통지 본문에 기재
	주주 질의, 발언 제한 기준	- 제한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은 미리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포함 - 총회의 규모, 예상 질의 수, 의제의 중요성, 현장출석 주주 적용 기준과의 균형 등 고려한 합리적·공정한 기준
기타	개최 의무 대상 회사 판단 시점 및 기준	- 별도(개별)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 조 원 이상 -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이 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 결의 후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
	본인확인 방법	- (국내 주주)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, 아이핀, 휴대폰 인증 등 - (위 방법이 불가능한 외국인 주주 등)는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 등사용
	의사록 기재	- 전자주주총회 병행 사실, 전자출석 주주의 토론 개요·표결방법·결과를 현장총회 내용과 통합하여 의사록에 기재

III. 기존 상장회사협의회 매뉴얼과의 주요 차이점

매뉴얼은 법무부 가이드라인 제정 전에 작성된 비구속적 실무 참고자료입니다. 양 자료는 쌍방향·실시간 참여, 현장·전자출석 중복 방지, 공정한 질의·표결, 사전 장애 대비 등의 기본 방향에서 일치하지만, 일부 운영기준의 법적 해석 및 권고 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.

구분	상장회사협의회 매뉴얼(2026. 9.)	법무부 가이드라인(2026. 11. 25.)
개인정보 처리	•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본인확인정보·녹화영상의 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표준 위탁계약서를 제공	•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고 별도 법령 근거가 필요 • 동의에 따라 처리한 개인정보는 동의 시 고지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, 그 밖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/ 법령에 따른 경우 분리보관
사전신청 마감	• 총회 전날 영업시간 내 마감 가능 • (표준안) 회사가 정한 예외사유가 있으면 마감 후 신청도 접수할 수 있음	• "전날"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일 • 전날보다 이른 날로 마감할 수 없으며, 전날 특정 시각 마감은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 • 회사 측 오류로 기한을 놓친 주주에 대한 예외 접수 고려
사전신청자 선별·인원 제한	• 사전 신청기간의 충분한 부여 및 마감시각 고지, 동시접속 여유용량 확보 등을 권장 • 사전신청자 선별 및 정원 상한의 법적 문제는 별도 항목으로 상세히 검토하지 않음	• 사전신청제는 주주 선별·출석제한 수단이 아니며, 적법한 사전신청자 전원에 대한 전자출석 보장이 원칙 • 사전신청자 전원 출석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(1) 합리적 조치를 다하고, (2) 지체없이 안내 및 대안을 모색하고, (3)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적용 시 재량기각 판단에 긍정적 요소
현장출석 후 전자출석	• 사전신청 후 현장출석한 주주는 사전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, 이후 전자출석 재시도를 불허하는 처리기준 제시	• 현장출석 후 전자출석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출석 인정 • 다만 사전신청이 필요한 회사인 경우 현장출석 이후에는 전자주주총회 출석하지 못함

구분	상장회사협의회 매뉴얼(2026. 9.)	법무부 가이드라인(2026. 11. 25.)
질의·(수정)의안	• 질의·발언의 사전 제한과 현장·전자출석 주주의 형평성, 주주제안자의 설명기회 보장을 중심으로 제시	• 질의·발언 제한은 (수정)의안의 제출 횟수·시간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• 현장주주총회와 실질적 형평 필요 • 안건당 횟수, 발언시간, 문자 질의 분량 및 시한, 제한사항 및 절차 등 사전에 정하고 소집통지 기재
사전투표와 전자출석	• 사전 서면·전자투표 철회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의 전자출석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운영을 권장	• 사전신청만으로 기존 투표가 철회되지는 않음 • 별도의 철회 의사표시 또는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통한 의사 철회·변경 필요 • 사전신청시 또는 당일 본인확인시 사전 의결권 행사 철회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나, 철회방식은 반드시 주주에게 사전 안내하고 안내한 대로 처리
통신장애·연기·속행	• 정관·운영규정 근거와 사전고지가 있으면 불가항력적 장애 시 의장의 직권 연기·속행이 가능하다는 해석 제시	• 연기, 속행은 원래 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, 통신장애로 보통결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 필요 • 통신장애 발생 시의 총회 연기, 속행에 관한 사항은 "주주총회" 결의를 규정하는 것을 권고 • 개회 직후 개별 주주총회 결의로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, 정관·운영규정에 근거를 둘 수 있음 • 운영규정에 연기·속행 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두는 것을 권고하고, 해당 내용은 소집통지에 사전 안내
법정 5 년 보존범위	• 전자주주총회 개최 기록 전반의 5 년 보존을 전제로 본인확인·출석·질의·표결 로그 및 녹화영상 등을 보존목록으로 제시	• 상법상 5 년 보존·3 개월 본점 비치의 대상은 "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"로 해석 • 통신장애 발생에 관한 기록, 의장이 주주의 질의를 처리한 내역은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

IV. 시사점

2027년 전자주주총회 시행을 앞둔 상장회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상장협 매뉴얼에 따라 이미 마련한 운영규정·소집통지문·관리기관 위탁계약 및 비상대응 절차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매뉴얼 양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의장에게 통신장애 시 연기·속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준비해 온 회사라면, 개회 직후 주주총회 결의를 받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 이사회·주주총회의 권한배분, 출석·사전투표의 경합 처리, 질의·(수정)의안 제출 기회, 통신장애 대응 및 개인정보 보존체계 등은 사전 확정된 운영기준과 실제 시스템 기능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한편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무부장관의 법정 고시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후속 고시 및 유권해석의 제정·발표 여부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「2027 Governance Solutions Agenda」(2026. 11. 2.) 뉴스레터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,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는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 등 여러 지배구조 제도 변화가 전자주주총회와 함께 적용될 예정이므로, 선제적인 준비로 변화하는 지배구조 제도에 빈틈없이 적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 하겠습니다.

관련 구성원

윤성조
변호사
T 02.3404.0196
E sungjo.yun@bkl.co.kr

이오령
변호사
T 02.3404.0688
E ohryung.lee@bkl.co.kr

배용만
변호사
T 02.3404.6577
E yongman.bae@bkl.co.kr

최철웅
변호사
T 02.3404.7352
E cholung.choi@bkl.co.kr

김경수
변호사
T 02.3404.6954
E gyeongsu.kim@bkl.co.kr

박종승
변호사
T 02.3404.6962
E jongseung.park@bkl.co.kr

장윤제
전문위원
T 02.3404.3277
E younje.jang@bkl.co.kr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